

## 성동구보건소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##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(변경처분)

- 1.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징금 420만원을 부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,
- 2. 식품위생법 제8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영업 정지 처분으로 변경처분 하고자 합니다.

## 가. 처분내역

업	종	일반음식점	신고번호	20140036286(8670)	업 소 명	헬로피쉬			
영 업 자		유수정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426(상왕십리동, 오정빌딩)							
위반내용		신고된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영업 2차							
처분	기존	과징금 420만원 부과(영업정지 7일에 갈음)							
	변경	영업정지 7일(2015. 2. 16. ~ 2015. 2. 22.까지)							

붙임: 행정처분명령서 1부. 끝.

주무관	변귀석	식품위생팀장	정창훈	보건위생과장	정주섭	보건소장	02/10 김 <b>경희</b>	
협조자								
시행 보건	l위생과-2246	(		) 접수		(		)
		동구 마장로 23길 전송 02-2286-7		/ http://bogunso.sd.go.kr / captainlay@sd.go.kr / 부분공개(6)				